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추미애 (법무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고갈

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수입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데, 최근 5년간 벌금수입금이 연 평균 5% 감소하는 반면 기금 지출은 연 평균 2.5% 증가함에 따라 '20년도 기금 내 여유자금 고갈됨. 이에 벌금 전입비율을 8%로 상향해 기금내 여유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벌금 전입비율을 6% → 8%로 상향(안 제2조 제1항)

벌금 수납액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입비율을 상향해 기금 재원 확충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재부 법사예산과 협의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8. 28. ~ 9. 17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6”을 “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「범죄피 해자보호기금법」(이하 “법”이 라 한다) 제4조제2항에서 “대통 령령으로 정한 비율”이란 100분 의 6을 말한다.	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8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무부 인권구조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868